##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49 발의연월일: 2025. 5. 19.

발 의 자:차규근·신장식·이해민

김재원 · 김준형 · 백선희

서왕진 • 김선민 • 한창민

정춘생 · 강경숙 · 황운하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습기 살균제 사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사모펀드 부실판매 및 거짓운용 사건, 가짜뉴스 및 안전기준 위반의 대규모 참사 사고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악의적 위법행위를 사전에 억지하고, 해당 위법행위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유인 자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인의 상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66조의2 신설).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1장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 ①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소(訴)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고의 및 중과실의 정도
- 2. 발생한 손해의 정도
- 3. 상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 4. 상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내용 및 정도
- 5. 상인의 재산상태
- 6. 상인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 ④ 제1항의 배상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 ⑤ 이 조는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다른 법률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6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선 성> <신 설>	제66조의2(상인의 손해배상책임 에 대한 특례) ①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 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제1항의 책임에 따른 손해 배상청구는 소(訴)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및 중과실의 정도 2.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상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상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내용 및 정도

- 5. 상인의 재산상태
- 6. 상인이 피해구제를 위하여노력한 정도
- ④ 제1항의 배상책임을 미리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효력이 없다.
- ⑤ 이 조는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다른 법률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